

※본 물품은 납품시 단가가 적용되므로 당초 납품요구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.

- 실수요부서 치수와 담당자 최규석, 전화번호 : 02-3780-0683

- 기타 :

※레미콘 단가계약체결 시 조달청에서 품질보증 및 물품대금 반납 보증각서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물품납품후 검사요청시 납품업체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검수공무원은 즉시 시험검사전 발행임을 표기하고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함(납품기한 변경분 입니다. 수정일자 : 2019-04-01-13:29:20:492)

※ 기 타 사 항

* 조달청에 일괄하자보증서를 제출한 물품입니다. 단 단가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이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개별 하자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하자보수보증금율 : 6% 이상

-하자보수보증금 납부관련 안내-

* 조달청에“일괄하자보증서”를 제출한 물품입니다.

단,‘단가계약 만료일(2019.8.31)’로부터 1년 60일 이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개별 하자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.

* 하자보수보증금율 : 계약금액의 110%의 6% 이상

* 하자보수기간 : 계약기간+하자기간+1년 60일

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

직 인 생 략

조달물품 납품이후 발생한 제품하자, A/S불만 등 품질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=> 조달품질신문고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.

단, 납품이전(조달요청접수~계약이행시까지)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계약부서(담당자성명/전화번호)에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조달품질신문고 이용방법

○ 나라장터(www.g2b.go.kr) 접속 => 조달청계약요청(중앙조달) => 조달품질관리 => 조달품질신문고

○ 조달품질신문고 상담전화 : 1588-8128

※조달청에서는 조달청계약서(납품요구서)로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의 80%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 「네트워크론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※상세안내: 조달청홈페이지(www.pps.go.kr) >정보제공 >유동성지원, 기타문의는 계약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